

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        | 제 581 호        |
| 의 결<br>연 월 일 | 년 월 일<br>(제 회) |

##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

|       |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|
| 제 출 자 | 충 청 북 도 지 사   |
| 제출연월일 | 2020년 11월 17일 |

##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

|          |    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<br>번호 | 581 |
|----------|-----|

제출연월일 : 2020년 11월 17일  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### 1. 제안사유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충청북도의회 심의의결을 받고자 합니다.

### 2. 주요내용

-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

(단위 : 백만원)

| 기 금 명  | 2019년도말<br>조 성 액 | 2020년도 운용계획 |    |        |     | 2020년도말<br>조 성 액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|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|
|        |                  | 당초          |    | 변경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|
|        |                  | 수 입         | 지출 | 수 입    | 지 출 |                  |
| 투자진흥기금 | 10,008           | 23,141      | 0  | 10,227 | 0   | 20,235           |

### 3. 의안전문 : 첨부 (202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)

### 4. 관계법령 발췌 : 불임

□ **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**

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 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. <개정 2015.7.24.>

1.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
2.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
3.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5.7.24.>
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2.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

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1.5.30.]